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제3국 등을 이용한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덤프물품을 제3국 등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, 덤프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어 덤프물품으로 조립·완성한 경우에도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,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(안 제71조의2)

현행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덤프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중 덤프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을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제3국 등을 이용하여 덤프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.

철강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등에서 덤프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, 덤프물품의 부품·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프물품으로 조립·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하여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(안 제71조의7)

- 1)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,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.
- 2)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우회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, 무역위원회의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1개월씩 연장함.

다.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 연장(안 제203조)

보세공장의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세공장의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,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8. 12. ~ 9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덤핑방지관세물품과 변경된 물품의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”를 “제1항 제1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 및 제2호에 따른 제3국 조립 또는 완성행위”로 한다.

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

1.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(이하 “덤핑방지관세물품”이라 한다)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,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(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“경미한 변경행위”라 한다)를 말한다.
2.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된 부품 또는 원재료 등을 상당한 가치로 사용하여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

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완성하는 행위(이하 “제3국 조립 또는 완성 행위”라 한다)

제71조의3 중 “변경 행위”를 “변경 행위 및 제3국 조립 또는 완성 행위”로 한다.

제71조의7제3항 중 “1개월”을 “2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8개월”을 “9개월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9개월”을 “10개월”로 한다.

제71조의9제1항 후단 중 “여부”를 “여부”로, 같은 항 본문 및 단서 중 “공급자”는 “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(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부품 또는 원재료 등의 공급자를 포함한다)”로, “로 보며”를 “로, “덤핑 방지”는 “우회덤핑 방지”로 보며”로 한다.

제203조제5항 중 “5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회덤핑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의2, 제71조의3, 제71조의7 및 제71조의9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20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71조의2(우회덤핑의 행위 유형)		제71조의2(우회덤핑의 행위 유형)		
<u>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제51조에 따라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(이하 “덤핑방지관세물품”이라 한다)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,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(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“경미한 변경행위”라 한다)를 말한다.</u>		<u>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제51조에 따라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</u>		
		<u>1. 법 제51조에 따라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(이하 “덤핑방지관세물품”이라 한다)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,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(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“경미한 변경행위”라 한다)를 말한다.</u>		
		<u>2. 덤프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된 부품</u>		

② <u>덤핑방지관세물품과 변경된 물품의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</u>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제71조의3(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)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<u>변경행위</u>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(이하 “우회덤핑”이라 한다)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 제71조의7(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) ①·② (생략)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	<u>또는 원재료 등을 상당한 가치로 사용하여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완성하는 행위(이하 “제3국 조립 또는 완성행위”라 한다)</u> ② <u>제1항 제1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 및 제2호에 따른 제3국 조립 또는 완성행위</u> ----- ----- ----- 제71조의3(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변경행위 및 제3국 조립 또는 완성행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71조의7(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
--	--

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제71조의9(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) ①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

----- 2개월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9개월 -----

-----.
----- 10개월 -----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71조의9(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) ① -----

-----.

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 부터 <u>5일</u>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 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 보해야 한다.	----- --- <u>10일</u> ----- ----- -----.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432